

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

(김유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51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8. 13.

발의자 : 김유숙, 한명훈, 이대구,
설호영, 현옥순, 박은정,
이지화, 선현우, 박은경,
이진분, 한갑수 의원(11인)

1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지원신청 등 (안 제5조)
- 업무의 위탁 (안 제6조)
- 관련기관과의 협력 (안 제7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 1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3

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6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4

【붙임 1】 제정조례안

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세대이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
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
5. 「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1인 가구 중 안전에 취약한 세대
6. 13세 미만의 어린이
7. 65세 이상의 노인
8.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

제4조(지원범위)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,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설비 점검 · 정비
2.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 · 정비
3.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 · 차단기 설치
4.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

5.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

6. 그 밖에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신청 등)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,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.

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, 임대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.

제6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(관련기관과의 협력)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전문기관, 교육기관,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.

제3조(지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」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김유숙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65)

[별지 서식]

안전시설 지원 신청서

지원 대상자	성명	생년월일	세대원수	
	주소		전화번호 (휴대폰)	
	대상자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상위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문화가족 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가족	<input type="checkbox"/> 1인 가구 <input type="checkbox"/> 13세 미만 어린이 <input type="checkbox"/> 65세 이상 노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담당공무원 확인란
지원 시설 명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방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스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피난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	

「안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
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(이하 "개인정보"라 한다)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

동의합니다. 동의하지 않습니다.

※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·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
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자 : 안산시장

나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 :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

다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항목 : 신청서 기재사항

라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간

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.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안산시장 귀하

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9-519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. 9. 2.
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별지 중 지원시설명란의 피난시설은 제4조제1호부터 5호까지의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고, 제4조제6호의 그 밖에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포함되므로 삭제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별지 중 지원시설명란의 ‘피난시설’ 삭제

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**

별지의 지원시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지]

지원시설명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방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전기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스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
-------	---

[별지 서식]

안전시설 지원 신청서				
지원대상자	성명		생년월일	세대원수
	주소			전화번호 (휴대폰)
	대상자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상위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문화가족 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가족	<input type="checkbox"/> 1인 가구 <input type="checkbox"/> 13세 미만 어린이 <input type="checkbox"/> 65세 이상 노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담당공무원 확인란
	지원시설명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방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전기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스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	
<p>「안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인)</p> <p>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(이하 "개인정보"라 한다)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습니다.</p> <p>※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·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가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자 : 안산시장 나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 :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다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항목 : 신청서 기재사항 라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간</p> <p>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안산시장 귀하</p>				